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9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공고 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1. 목 적

-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1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대상 및 분야

구 분	조사 대상
상용기술개발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원천핵심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기 개발기술의 원천핵심기술 개발

※ 제안 기술분야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기술 분야를 참고하여 신청 바람.

3. 조사항목

- 제안기술의 명칭, 개발 목표와 내용, 필요성, 파급효과,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의 시장동향과 규모, 사업화계획, 기술개발사업비 규모 등

※ 수요조사서 양식(첨부 1)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4.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지원되었던 기술은 제외함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신규지원과제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 기술 관련 분야를 우선 검토하여 기획·선정함
- 상용기술개발 및 원천핵심기술개발의 경우 부품생산 목적의 생산장비, 정비 목적의 치공구 및 장비개발 등은 제외
- 아래의 경우는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수요조사양식(첨부 1)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5. 지원 내용 및 조건

- 개발 기간 : 단기(3년 이내), 중장기(총 5년 이내 ; 단계별 2~3년)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50~100%(무담보·무보증·무이자)

구분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상환조건
상용기술 개발	대 기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의 20%
원천핵심 기술개발	연구소	총사업비의 100% 이내	-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상용기술개발사업)

가.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6. 제안 자격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참고사항- 주관기관의 자격

- 향후 과제별 주관기관 선정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별로 아래와 같이 제한되므로 과제 제안시 참고

구분		신청자격
주관기관	상용기술개발	- 기 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원천핵심기술개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소 - 대 학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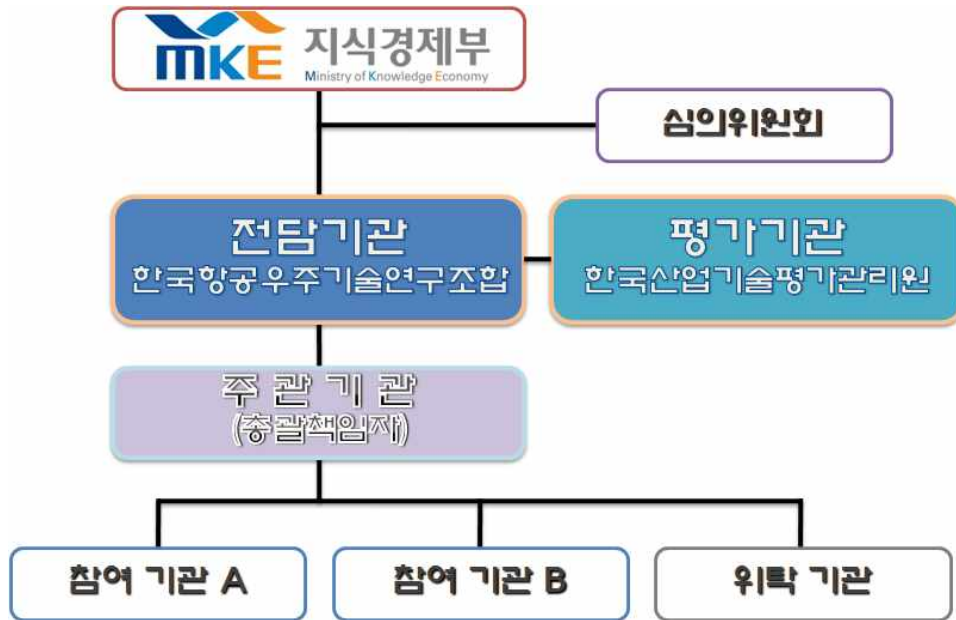
7.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수요조사제안서(첨부 1) 파일
 -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www.aerospace.re.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 E-mail(bk@aerospace.or.kr) 전송 및 방문 접수(전자파일 지참)
 - ※ 신청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Tel 02-786-4379)
- 접수기간 : 2011년 1월 12일 ~ 2월 8일 (*마감기한 엄수)
 - ※ 마감일 오후 3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근거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9. 사업 추진체계



10. 향후 추진 일정

- 2011. 1 ~ 2 : 수요조사
- 2011. 2 ~ 3 : 수요조사서 심의 및 과제 발굴·기획
- 2011. 4 : 신규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1. 5 : 신청 사업계획 평가
- 2011. 6 : 지원과제 대상 및 주관기관 확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T. 02-2110-5623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 T. 02-786-4379 / F. 02-761-1175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시스템평가팀 : T. 02-6009-8341

※ 문의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